

98.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

- 아버지는 2000년에 사망,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, 형은 2년 전에 사망
- 어머니 명의로 시골에 집이 있는데 사망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이 사망하고 형수와 조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
-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?

**회신**

- ☑ 사망자(부, 형)의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)과 그리고 등기부등본, 법정상속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

99.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**회신**

- ☑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(직계비속) 및 2순위(직계존속)가 없고 선순위로 3순위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제적등본)와 법정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망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

100.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

- 공동명의로 지분 중 일부의 지분을 구입하였고, 공동명의로 지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등기를 보냈으나 이사하였다고 반송되었음
- 공동지분권자에게 꼭 연락해서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, 공동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은?

**회신**

- ☑ 토지 등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도 채권·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주소로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

104.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

-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를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 시 가능 여부

회신

- ☑ 수인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토지공유자임이 기재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,
- ☑ 토지의 공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, 부동산의 권리설정·변경·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유대상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

105. 차량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**회신**

- ☑ 상속인 중 1인이 차량이전등록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(제적등본),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

106.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

- 사망한 형님 A(직계 및 배우자 없음)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폐차 시에 상속인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
- 형제 중 역시 사망한 누나 B가 있는데, 그 자녀의 초본 발급 문의
-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할지?

회신

- ☑ 폐차 관련신청서 + 자동차등록원부 + 가족관계증명서(제적등본)를 제출하는 경우 사망한 누나 B의 공동상속인 초본 발급 가능
- ☑ A의 상속 1순위자인 B 사망 시, B의 1순위 상속자가 B상속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음